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05년 8월 26일(금)
09:30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세제개편(안)

(정기국회 제출)

2005. 8

재 정 경 제 부

< 목 차 >

I. 세제개편 여건	1
II. '05년 세제개편 기본방향	2
III. '05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3
1. 경제활력 회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	3
1)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보완	4
(1) 조직변경 분야	4
(2) 사업조정 분야	7
(3) 재무구조 개선 분야	9
2)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합리화	11
(1) 타법인 출자에 대한 규제 폐지	11
(2)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폐지	12
(3) 국제조세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	13
(4) 기부금 제도 개선	17
(5) 접대비 제도 개선	20
(6) 배당금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22
(7) 기타 미비점 보완	24

3) 경제활력 회복27

- (1) 창업자금 사전상속 제도 신설 27
-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 28
- (3) 사립대 민자 학교시설 운영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9
- (4) 외국인투자 촉진 29

2.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대30

1)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기반 확충31

- (1)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 개선 31
- (2)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32
- (3)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 축소 33
- (4)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축소 33
- (5)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축소 34
- <참고>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여 폐지되는 감면제도 35

2) 과세기반 확대36

- (1)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 개선 36
- (2) 국외 이주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강화 37
- (3)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범위 축소 38
- (4)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 39
- (5)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 39
- (6)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용하는 수익사업 과세전환 · 40

3) 세율 조정41

- (1) 주세율 조정 41
- (2) LNG 세율 조정 42

3. 고령화 및 양극화에 대응한 세제 보완	43
1)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 지원세제 정비	44
(1)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44
(2)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 수령시 소득공제한도 조정	45
(3) 퇴직급여충당금 손비인정한도 축소	46
2) 중소기업·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	47
(1) 영세자영업자 세부담 경감을 위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조정	47
(2) 자영사업자 등의 사업양수도 요건 완화	48
(3) 중소기업 생산자금 선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론 활성화 ..	49
3)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활성화	50
(1)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배당소득 분리과세	50
(2) 임대사업 목적의 SPC 지원	51
4) 농·어민 생산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52
(1) 친환경 농업용 자재에 대한 지원 강화	52
(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52
5) 저소득·차상위계층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	53
4. 국가균형발전 지원	54
(1) 균형발전 특별세액감면제도 신설	55
(2) 기업의 단계적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확대	56
(3) 지방이전 기업 종업원에 대한 지원	57

5. 세제간소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58
1) 성실 중소사업자를 위한 간편납세제도 도입	58
(1) 적용대상 및 방법	58
(2) 과세소득의 계산	59
(3) 세액 계산 및 신고·납부	62
2) 연말정산 간소화	64
(1) 연말정산 간소화	64
(2) 연말정산 전산화대상 자료제출 의무부여 등	65
(3)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66
3)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67
(1) 신고·납부기한 연장사유 확대	67
(2)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한 연장	67
(3)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68
(4) 압류금지 되는 급여의 범위조정	69
(5) 인지세 전자납부방식 도입	70
4) 관세제도 개선	71
(1) 통관단일창구 운영 법적 근거마련	71
(2) 세관장의 승객예약정보 제출요구권 신설	72
(3) 관세 가산세 부과체계 개선	73
IV. 향후 추진일정	74

I. 세제개편 여건

□ (경제상황) 지난 2년간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조정등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으로 성장세가 둔화

○ 금년들어 민간소비·건설부문에서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설비투자 등은 아직 미흡한 수준

* 성장률(%) : ('03)3.1 → ('04)4.6 → (05.1/4)2.7 → (2/4)3.3

* 민간소비(%) : ('03)△1.4 → ('04)△0.5 → (05.1/4)1.4 → (2/4)2.7

* 설비투자(%) : ('03)△1.2 → ('04)3.8 → (05.1/4)3.1 → (2/4)2.8

○ 경제활력을 조기에 회복하고, 지속성장을 위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한편, 양극화 해소 등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

□ (세수여건) 지난해 세수가 예산대비 4.3조원 부족한데 이어 금년 상반기 세수진도비도 전년대비 1.9%p 미달하는 등 세입여건이 어렵고

○ 금년 하반기 이후 민간소비 등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경우 내년도 소요예산의 안정적인 조달 여부도 불투명

* 6월말 세수실적 : (04.6)56.8조원, 진도비 48.3% → (05.6)60.5조원, 진도비 46.4%

○ 반면, 사회·복지 등 재정수요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세율인하, 감면 등 큰 폭의 세수감을 초래하는 세법 개정은 어려운 상황

□ (세법개정 수요) 국가균형발전 지원, 부동산시장 안정, 소득과악 인프라 구축, 간편납세제도 등

○ 그동안 제기된 세법개정수요를 반영하고, 세제운용측면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

II. '05년 세제개편 기본방향

□ 금년도 세제개편은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추진

(1) 경제활력 회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

- 기업구조조정세제 정비
-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합리화

(2)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대

- 일몰도래·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 폐지·축소

(3) 양극화·고령화에 대응한 세제보완

-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 지원
- 중소기업·자영사업자 경영안정 지원

(4) 국가균형발전

- 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제도 신설

(5) 세제간소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 간편납세제도 도입, 근로소득 연말정산제도 개선 등

◇ 금년 정기국회에 법인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주세법·특별소비세법·인지세법·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관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등 10개 개정안 제출

* 부동산세제에 관한 사항은 8.31일 발표될 부동산대책에 따라 관련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Ⅲ. '05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1. 경제활력 회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

◇ 참여정부 출범 이래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 투자촉진, 벤처기업 활성화,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위한 세법개정 추진

- R&D · 외국인투자 지원 확대
- 소득세율 1%p, 법인세율 2%p인하
- 서비스산업 세제지원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대폭축소 등

◇ 최근 우리 경제는 환율하락과 고유가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나

○ 민간소비의 점진적 확대와 세계경제의 호조세 등에 힘입어 하반기 이후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바

- 경제활력의 조기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세제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

- 기업구조조정 세제를 보완하고 국제조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하는 등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 · 합리화
- 벤처기업 활성화 ·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도입 등 경제활력 지원

1)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보완

(1) 조직변경 분야

① 합병·분할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법인세법§45)

현 행	개 정 안
☐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 피합병법인 주주 등의 지분이 10%이상 ○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 ○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구분경리 * 승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내에서 공제 <신 설>	○ 동일업종 법人间 또는 중소기업간 합병시 안분계산* 허용 * 안분계산기준 : 사업용자산가액 비율 ☐ 분할법인이 분할후 소멸하는 경우 ○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법인에게 이월결손금 승계 허용 * 승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내에서 공제

<개정이유>

- ☐ 동일업종 법인간의 원활한 합병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 ☐ 분할법인이 분할로 소멸하는 경우 그 실질이 합병과 같으므로 합병에 맞추어 이월결손금 승계 허용

<적용시기> 2006.1.1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② 합병·분할시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대상 확대(법인령§80)

현 행	개 정 안
☐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등이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발생하는 평가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 대상자산 : 토지·건물	☐ 합병·분할시 과세이연 대상 자산의 범위를 확대 ○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개정이유>

- ☐ 과세이연 대상 자산을 모든 유형고정자산으로 확대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 2006.1.1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③ 합병 등 중복자산 처분시 법인세 분할과세 제도 신설(조특법§4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법인이 07.12월까지 합병에 따라 발생한 중복자산을 처분 하고 1년내 토지·건물·기계 장치 등 다른 사업용 자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 양도차익에 대해 3년거치후 3년간 균등 익금산입

<개정이유>

- ☐ 합병, 분할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자산의 양도
 차익에 대해 분할과세할 수 있도록 하여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006.1.1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④ 자회사·지주회사 설립 지원제도 보완(조특법§38,§38의2)

현 행	개 정 안
☐ 법인이 사업용 자산 및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 지주회사 설립·전환 지원 ○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포괄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을 통해 -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유희자산 추가 ○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추가 * 특정기업의 주주들이 소유주식 전부를 이전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지주회사는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

<개정이유>

- ☐ 유희자산을 이용한 자회사 설립을 지원하여 자회사 설립 촉진 지원
- ☐ 포괄적 이전에 의한 일반 지주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과세이연을 허용

<적용시기> 2006.1.1 이후 현물출자·주식이전 분부터 적용

(2) 사업조정 분야

① 자산 교환시 지원요건 완화(법인세법§50)

현 행	개 정 안
☐ 업종 전문화를 위해 특수 관계가 없는 법인간에 동일 종류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환하여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당초 용도와 같은 용도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 지원요건 완화 ☐ 동일 용도로의 사용제한을 폐지하여 -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 허용

<개정 이유>

☐ 교환자산에 대한 용도제한을 폐지하여 기업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2006.1.1이후 자산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② 중소기업자의 업종전환 지원제도 신설(조특법§3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중소기업이 07.12월까지 업종 전환을 위하여 ○ 종전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고 1년내 새로운 사업에 사용할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 개인 : 기계장치등 취득분 양도세 50% 감면, 토지·건물취득분 양도세 과세이연 - 법인 : 3년거치 3년분 할익금산입 * 전환전사업 : 업종제한 없음 * 전환후사업 : 제조, 물류, 연구개발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영화산업 등 21개 창업지원 대상업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 한정

<개정이유>

☐ 사양업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식 정보산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으로의 업종전환 지원

<적용시기> 200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재무구조 개선 분야

① 중소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에 대한 지원 신설(조특법§36, §41)

현 행	개 정 안
☐ 정리계획·화의인가 결정 기업, 부실정후기업이 인가결정 등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 채무면제액에 대해 3년 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금융기관은 면제해준 채무를 손금산입 <신 설> <신 설>	☐ 중소기업이 07.12월까지 채권 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추가 ○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융부채 상환시 - 개인 : 50% 양도세 감면 - 법인 : 양도차익 3년거치 3년분할 익금 산입 ○ 최대주주로부터 자산을 증여 받아 금융부채 상환시 - 자산수증익에 대해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등록세·취득세 비과세 - 최대주주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처분대금 증여시 양도세 50% 감면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부채감축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지원

<적용시기> 2006.1.1 이후부터 적용

② 채무의 출자전환에 대한 지원 확충(법인세법§17)

현 행	개 정 안
□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발행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출자전환 받은 채무액(채무 면제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되 다음의 경우는 익금불산입 후 장래 발생하는 결손금과 상계 ○ 정리계획·화의인가 결정 기업, 부실징후기업 - 적용시한 : '05.12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에 따라 출자전환받는 기업 등 추가 - 폐지

<개정이유>

□ 채무의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지원

<적용시기> 2006.1.1 이후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2)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합리화

(1) 타법인 출자에 대한 규제 폐지(조특법§135)

현 행	개 정 안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과다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 타법인의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 손금불산입액 $\text{지급이자} \times \frac{\text{타법인주식}}{\text{차입금}}$ ※ '80년 도입	<폐 지>

<개정이유>

☐ 출자를 통한 기업확장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출자 총액 제한 등을 통하여 제한 가능

☐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차입금 비율*이 크게 낮아져 제도를 유지할 실익이 약해짐

* 부채비율(%) : ('98)336 → ('01)196 → ('04)114 (미141, 일본254)

<적용시기> 2006.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폐지(조특법§137)

현 행	개 정 안
☐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 손비인정 한도 : 수입금액의 2% * 호텔·여관(관광숙박업 제외), 주점 (관광유흥음식점 제외), 무도장, 도박장(카지노 제외), 안마업 ○ 기타 업종 : 전액 손비인정	○ 전액 손비인정

<개정이유>

☐ 업종간의 형평성 고려

<적용시기> 200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국제조세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

① 국제적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

가.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원칙」 적용 명문화(국조법§3의2)

현행	개정안
<신설> * 현재는 법령해석에 의해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조세조약에 적용	☐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조세조약과 세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명문화 ○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

<개정이유>

- ☐ 내·외국인 투자가가 조세피난처 등에 조세회피목적으로 명목회사를 설립하여 우회적으로 국내에 투자하면서 조세조약의 혜택을 향유하는 경우
-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될 수 있음을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과세의 투명성 제고

※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OECD입장

- 조세조약의 주요기능에는 이중과세 방지뿐만 아니라 조세회피 방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에도 실질과세원칙 적용 가능

※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93누13162)

- 네덜란드 회사인 세싱톤은 단지 형식적으로만 그 주된 사무소를 네덜란드에 등록하였으므로 한·네덜란드간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

<적용시기> 2006.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나.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특례규정 신설(소득세법§156의3, 법인세법§98의5)

현행	개정안
<신설>	☐ 국내법인이 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펀드 등에게 투자소득(배당,이자, 주식양도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 우선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 외국펀드등이 3년 이내 과세관청에 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어 경정청구하는 경우 해당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 ○ 다만, 국세청에 사전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펀드 등의 경우는 처음부터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허용

<개정이유>

☐ 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등이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조세회피(treaty shopping)를 하는 행위 방지

※ 원천징수에 대한 OECD입장

- 조세조약 체결국가는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소득발생지국의 과세제한을 적용하기 위해 자국 국내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OECD모델 조세조약 제1조에 대한 주석서 제26.2문단)

※ 유사제도 도입국가 : 독일, 미국, 캐나다, 스위스

<적용시기> 2006.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국제조세체계의 합리성 제고

가. 전문인적용역 과세제도 개선(소득세법§119·법인세법§91)

현 행	개 정 안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전문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 ○ 총지급액에 대하여 분리 과세 (지급금액의 20%) * 전문인적용역: 개인 또는 법인이 제공하는 회계·기술지원·경영자문등의 용역	○ 항공료·숙박비·식비 등 실비변상적대가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 전문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비거주자(개인)의 경우 종합과세방법 선택 가능

<개정이유>

- ☐ 외국법인등의 인적용역 제공 대가에 대한 과세시 과세소득에서 실제 발생경비를 차감하는 국제적 과세기준 도입

<적용시기> 2006.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나. 내국법인 판정기준 보완(법인세법§1)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의 정의 ○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신 설>	☐ 내국법인 판정기준 추가 (① 또는 ②) ① 현행과 동일 ② 국내에 실질적 지배관리장소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를 둔 법인

<개정이유>

- ☐ 외국에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실제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으로 봄

<적용시기> 2006.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③ 조세피난처 세제의 정비

가. 조세피난처 판정기준 보완(국조법§17)

현행	개정안
☐ 조세피난처 요건(①또는②) ①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 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 ② 실제발생소득에 대해 비과세·감면하는 국가 등과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고시 (임의규정)	① 15%세율은 현행 유지하되 - 실제발생소득이 1억원 이하인 법인에 대해서는 조세피난처세제 적용배제 ② OECD 회원국에서 지정한 조세피난처를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고시 (강행규정)

<개정이유>

☐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은 줄이되 제도의 효율성은 제고

<적용시기> 2006.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나. 해외진출 지주회사에 대한 조세피난처 적용 개선(국조법§18의2)

현행	개정안
☐ 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해외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모두 조세피난처세제 적용	☐ 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해외 지주회사라도 ○ 모든 자회사가 조세피난처 세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조세피난처 세제 적용 배제

<개정이유>

☐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강화

<적용시기> 2006.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4) 기부금 제도 개선

[기부금 제도 현황]

-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자(개인·법인), 기부대상에 따라 차등하여 소득의 5~100%한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

개 인	종 류	법 인
법정기부금 (소득의 100% 한도내에서 손비 인정)	· 국가·지자체 기증 금품, 국방헌금,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문화예술진흥기금('06년 일몰)	법정기부금 (100%)
	· 사립학교·기능대학·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06)	특례기부금 (50%)
	· 사회복지공동모금회('06)	
	· 사립학교 등에 대한 장학금, 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한 기부	지정기부금 (5%)
	·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용역, 정치자금	-
특례기부금 (50%)	(개인·법인소득의 50%범위내에서 비용인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독립기념관,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학기술), 교육방송공사, 국립암센터 ※ 모두 '06년 일몰	특례기부금 (50%)
	(개인소득의 30%범위내에서 비용인정)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개인소득의 10%, 법인소득의 8% 범위내에서 비용인정) · 비영리전문예술법인('06)	
지정기부금 (10%)	· 지정기부금단체 - 복지법인, 학교·기능대학, 학술·장학·기술 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종교, 의료법인 - 대한적십자사, 한국보훈복지공단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43개) -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05.6월 말, 789개) · 특정용도 지출 기부금 - 사립학교등의 장이 추천한 개인의 교육비등 - 영업자단체에 대한 특별회비, 임의단체 회비 - 노동조합비, 교원단체 회비, 직장협의회 회비	지정기부금 (5%)

① 법정기부금 비용인정 한도 축소(법인세법§24, 조특법§73)

현 행	개 정 안
☐ 법정기부금* ○ 국가·지자체 기증 금품 ○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 이재민 구호금품 ○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06) * 소득금액의 100% 범위내에서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는 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비용인정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 ○ 소득금액의 50%로 축소 - 다만, '0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금액의 75%까지 인정 ○ 한도 초과액은 1년간 이월 공제

<개정이유>

- ☐ 영리기업이 소득의 전액을 기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 기업의 기부는 소득금액에서 강제적립금, 배당 및 채투자 재원을 제외한 만큼만 가능
 - 상장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법인이 실제 소득금액의 50%를 초과하여 기부한 사례도 없음

<적용시기> 200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② 사립학교등에 대한 기부금 비용인정 범위 조정(조특법§73)

현 행	개 정 안
☐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금 손비인정 범위	☐ 손비인정범위를 국가(국공립 학교) 등에 대한 기부금 수준으로 조정
구 분 개 인 법 인	
· 사립학교·기능대학 등의 시설비, 연구비, 교육비	○ 개인 : 현행유지
· 사립학교·기능대학에 대한 장학금	○ 법인 : 5, 50% → 50% * 3년간 75% 인정
☐ 특례기부금(소득금액의 50% 범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	☐ 특례기부금 대상 추가
○ 사립학교병원·국공립병원의 시설비 등 ○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의 시설비 등 ○ 한국과학문화재단, 국제교류재단
※ 한도초과액: 3년간 이월공제	※ 한도초과액: 1년간 이월공제

<개정이유>

- ☐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간 형평제고
- ☐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는 긴급구호·봉사활동·혈액사업 등을 감안
- ☐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과학문화재단의 한국학 연구 및 과학기술 진흥사업 지원
- ☐ 특례기부금의 경우 한도가 훨씬 적은 지정기부금(소득의 5%)보다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이 짧을 필요

<적용시기> 200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5) 접대비 제도 개선

① 접대비 한도액 차등 적용 폐지(법인세법§25, 조특법§136)

현 행	개 정 안
□ 접대비 한도액 (①+②) ①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② 수입금액 × 적용율*(0.2~0.03%) * 100억이하 0.2% 100~500억 0.1% 500억 초과 0.03% ○ 소비성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경우 : ① + ②×20%만 인정 ○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정부지분 20%이상), 정부투자·출자기관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 : (①+②) × 70%만 인정	○ 폐 지

<개정이유>

- 특정 업종·기관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제도도 간소화

<적용시기> 2006.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② 접대비 증빙요건 완화(법인세법§25·영§41, 소득세법§35)

현행	개정안
□ 접대비관련 증빙서류 수취의무 ○ 5만원초과 접대비는 법정 증빙서류* 미수취시 한도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손금 불산입 * 법정증빙서류 :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경조사비의 경우 10만원으로 인상 ○ 해외특수지역(예:아프리카 등)에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정증빙 수취의무 예외 인정

<개정이유>

- 현실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정증빙수취가 곤란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증빙수취 예외 범위 확대

<적용시기> 200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6) 배당금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① 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 보완 (법인세법§18의2, §18의3)

현 행	개 정 안
☐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일정율*을 익금불산입하되, 다음의 경우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 지분율에 따라 60~100% ○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시 ○ 자회사가 계열회사 외의 일반법인에 1%이상 재출자시 * 배제금액 = 수입배당금 × 익금불산입율 × (재출자액 / 지주회사 출자액)	○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시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삭 제>

<개정이유>

- ☐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자회사가 계열사에 재출자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 억제
- ☐ 공정거래법에서도 계열회사외의 법인에 대하여는 재출자를 규제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익금불산입 허용

<적용시기> 2006.1.1 이후 배당 받는 분부터 적용

② 수입배당금·지급배당금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법인세법§18의2, §18의3, §51의2)

현행	개정안
☐ 다음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서 제외 ☐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SPC 등 명목회사로 부터의 배당	☐ 100%감면이 적용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추가 ☐ 비과세되는 배당 및 사실상 1인회사로 운영되는 명목 회사 등은 제외
☐ SPC등 명목회사가 배당가능 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지급배당금액을 소득공제	

<개정이유>

- ☐ 법인가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은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배당받는데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
- ☐ 사실상 1인이 지배하는 명목회사 등의 경우 경제적인 실질에
있어 간접투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제지원 배제

<적용시기> 2006.1.1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7) 기타 미비점 보완

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법인세법§29)

현행	개정안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일정 한도내에서 손비 인정 ○ 이자소득 : 100% ○ 이자소득 외 : 50%	○ 배당도 100% 손금산입 - 다만, 상증법상 제한을 위반한 주식(5%초과 보유분) 관련 소득은 제외 ○ 조특법상의 세액감면 등과 중복적용 배제

<개정이유>

- ☐ 비영리법인의 최소한의 수익창출활동과 관련한 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
-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조특법상 세액감면을 받는 것은 이중혜택

<적용시기> 200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② 스톡옵션 지원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조특법§15)

현행	개정안
☐ 다음 요건을 갖추어 행사하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이익기준 3천만원)하고 당해 법인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배제 ○ 부여일로부터 2년이상 근무 ○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월이내 행사 ○ 발행주식총수의 10%(벤처기업 20%) 범위안에서 부여 등	☐ 다음의 경우 소득세는 과세하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배제 ※ 관련법규정과 일치 ○ 2년미만 근무 후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 3월이후에도 행사기간내 행사하면 인정

<개정이유>

- ☐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
- ☐ 퇴직한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시점에 따라 부여법인의 부당행위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 해소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③ 보험사에 대한 사업비 규제 폐지(법인세법§26)

현 행	개 정 안
☐ 보험업 법인이 지출한 사업비중 ☐ 보험료 책정시 기준이 된 예정사업비의 1.1배를 초과하는 금액 손금불산입	<폐 지>

<개정이유>

- ☐ 금융감독원 감독규정에 의해 규제가 행해지고 있고,
타 금융기관에는 이러한 규제가 없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경제활력 회복

(1) 창업자금 사전상속 제도 신설(조특법 신설)

현행	개정안										
☐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 ☐ 상속시 상속전 10년기간중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 * 상속·증여세율 <table> <tr> <td>1억원 이하</td> <td>5</td> <td>10</td> <td>30</td> <td>30억원 초과</td> </tr> <tr> <td>10%</td> <td>20%</td> <td>30%</td> <td>40%</td> <td>50%</td> </tr> </table> * 공제액 : 증여시 3천만원 상속시 5억원	1억원 이하	5	10	30	30억원 초과	10%	20%	30%	40%	50%	☐ 65세 이상의 부모등이 30세 이상의 자녀 또는 결혼한 자녀에게 ☐ 창업자금을 '07년말까지 증여하는 경우 -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 하고 상속시 정산 ☐ 증여재산 : 30억원 한도 ☐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양도세 과세대상자산 제외 ☐ 사전증여재산특별공제 : 5억원 ☐ 대상업종 : 다음만 제외 ☐ 유흥주점업, 도박장운영업 등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 ☐ 사후관리 위반시 정상세율 (10~50%)로 과세(이자상당액 가산)
1억원 이하	5	10	30	30억원 초과							
10%	20%	30%	40%	50%							

<개정이유>

- ☐ 출산을 저하, 고령화 진전에 대응하여 젊은 세대로의 부(富)의 조기이전을 촉진하여 경제활력 증진 도모

<적용시기> 2006.1.1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조특법§25의2)

현 행	개 정 안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 대상시설 - 에너지절약형시설, 중질유재처리시설, 중수도시설,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 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10% ○ 일몰시한 : '05.12.31	○ 일몰 연장 : '07.12.31

<개정이유>

- ☐ 에너지 자원이 없고 고유가가 지속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촉진 유도

(3) 사립대 민자 학교시설 운영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10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민자로 건설하는 사립대 학교시설(예 : 기숙사) 운영 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 ☐ '07년말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까지 적용

<개정이유>

- ☐ 사립대 학교시설 민자사업을 지원하고, 기숙사생 비용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기> '06.1.1 현재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건설중인 분부터

(4) 외국인투자 촉진

가. 경제자유구역 조세감면 대상업종 추가(조특령)

현 행	개 정 안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해 3년간 100%, 2년간 50% 법인세·소득세 감면 ☐ 감면 대상 업종 - 제조업, 관광업, 물류업 <추 가>	- 의료기관 (종합병원 등)

<개정이유>

-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병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외국인투자자에게 필요한 생활기반시설 확충 유도

<적용시기> 200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대

◇ 지난해 조세감면액은 18.6조원으로 관련국세 대비 14%수준

- 전체 조세감면의 80%가 근로자·농어민 지원,
R&D·설비투자부문에 집중

◇ 최근 4년간 조세감면증가율(11.9%)이 국세증가율(9.2%)을 상회하고 있고

- 한번 도입된 제도는 항구화·기득권화 되는 경향이 있어
과세기반을 잠식하고 과세형평과 효율성 저해

* 조세 지출(조원) : ('01)13.7→('02)14.7→('03)17.5 →('04)18.6

* 관련 국세(조원) : ('01)88.6→('02)96.4→('03)107.5→('04)113.0

* 조세감면비율(%) : ('01)13.4→('02)13.3→('03)14.0 →('04)14.1

◇ 감면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감면,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감면 등을 중심으로 비과세·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

1)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기반 확충

(1)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 개선(조특법§7의2)

현 행	개 정 안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0.15%, 0.3%)	
☐ 결제대상거래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 결제대상거래 축소 -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만 허용 ※ 네트워크론에 대해서는 현행유지
☐ 일 물 : '05.12.31	☐ 일물연장: '07.12.31

<개정이유>

☐ 대기업의 경우 현금성 결제비율이 일정수준에 오른 점을 감안하여 폐지

☐ 다만, 중소기업간 거래는 현행과 같이 계속 지원하여 현금성 결제비율 제고

<적용시기> 2006.1.1이후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조특법§126의2)

현행	개정안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 ○ 2005년 11월 지출분까지	☐ 기한 연장 ○ 2007년 11월 지출분까지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 (\text{카드사용액} - \text{충급여액} \times 15\%) \times 20\%$	$= (\text{카드사용액} - \text{충급여액} \times 15\%) \times 15\%$

<개정이유>

☐ 신용카드사용이 어느정도 보편화되어 공제율 하향조정

* 신용카드사용액/민간소비지출액(%)

· 39('01년) → 46('02년) → 44('03년) → 41('04년)

- 카드사용자에 대한 경제·심리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일시적인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율을 소폭 인하

<적용시기> 2005.12.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3)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 축소(조특법§89)

현 행	개 정 안
☐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한도 ○ 20세미만 : 1천5백만원 ○ 20세이상 : 4천만원 ○ 노인·장애인 : 6천만원	☐ 지원대상 축소 ○ 20세미만 폐지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개정이유>

- ☐ 20세미만 저축의 경우 대부분 저축여력이 있는 고소득자가 세금우대를 추가로 적용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

※ 20세미만 소년·소녀가장의 경우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이므로 현행 생계형저축(한도 3,000만원) 비과세특례 이용 가능

<적용시기> 200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4)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축소(조특령§81)

현 행	개 정 안
☐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06년말까지) ○ 18세이상 세대주로서 - 무주택자 - 85㎡이하의 1주택 소유자	☐ 비과세대상 축소 ○ 18세이상 세대주로서 - 무주택자 - 국민주택이하로서 가입당시 주택공시가액이 2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 공시가액 2억원이하 주택(추정) : 전국 94%, 서울51%, 경기 80%

<개정이유>

- ☐ 1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한 지원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1주택조차 구입할 수 없는 자와 불형평 문제

<적용시기> 200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5)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축소(관세법§95, 시행규칙§46)

현행	개정안
☐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 감면대상: 513개 품목 (열처리기, 레이저투영장치 등) ○ 감면율: 40% (중소기업 50%) ○ 일몰: '05.12.31	☐ 관세감면을 축소 ○ 감면율: 30% (중소기업 50%) ○ 일몰 연장: '07.12.31

<개정이유>

- ☐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 촉진을 위해 일몰을 2년 연장
- ☐ 향후 감면 폐지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 금년에는 감면수혜비중이 높은 대기업에 대하여 감면율을 일부 축소

<적용시기> 2006.1.1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참고>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여 폐지되는 감면제도

- 상장·등록기업의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제도(조특법)
-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 장기주식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도(조특법)
-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세 과세특례 제도(조특법)
 - 다만, 개정 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개정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부칙 신설)
- 농업진흥지역내의 자경농지를 농업기반공사·농업법인 등에 양도시 양도세 감면제도(조특법)
- 선박투자회사 출자주식 양도시 비과세 제도(조특법)
- 해외파견인턴사원에 대한 파견비용 세액공제제도(조특법)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조특법)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조특법)
- 방위산업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폐지(관세법)

2) 과세기반 확대

(1)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 개선(조특법§69)

현 행	개 정 안
①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상인 경우 감면	① 상속농지 자경기간 합산 방법을 합리화 - 상속인의 3년 이상 경작 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상인 경우 감면
② 감면한도 : 연간 1억원	② 감면한도 합리적 조정 - 5년간 1억원

<개정이유>

- ☐ 자경하지 않는 농지상속인도 최소 3년은 자경해야 감면
받도록 개선
- ☐ 분할양도를 통해 감면한도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 방지

<적용시기> 2006.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2005년말까지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시행일부터 2년 이내(2007년)까지 양도하는 경우
종전규정 적용

(2) 국외 이주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강화(소득령§154)

현 행	개 정 안
☐ 3년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 신도시 3년 보유중 2년 거주)한 1세대1주택 양도시 비과세 ☐ 다음의 경우 보유·거주 요건 미적용 - 협의매수·수용시 - 국외이주로 양도시	- 협의매수·수용시(사업인정 고시일전 취득분에 한함) - 국외이주로 출국후 2년내 양도시

<개정이유>

- ☐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예외규정 적용배제
- ☐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외이주후 오랜 기간(예:10년) 경과후 양도하여도 양도시까지 발생한 모든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불합리 해소

<적용시기>

- ☐ '06.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05년 말까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규정 적용
 - '05년 말까지 국외이주한 경우 시행일부터 2년내('07년말) 까지 양도시 종전규정 적용

(3)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범위 축소(소득세법§52)

현 행	개 정 안
☐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소득공제 (불입액의 40%, 연 300만원한도) ☐ 공제대상자 : 무주택자, 국민주택이하 1주택 소유자	☐ 공제대상자 : 무주택자 국민주택이하 1주택 소유자 로서 가입당시 주택 공시 가액이 2억원이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연 1,000만원 한도) ☐ 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 국민주택이하 주택 취득 - 취득주택을 포함한 2주택 이상 소유자는 거주하는 주택에 한하여 공제	☐ 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 국민주택이하로서 공시가액이 2억원이하인 주택 취득 - 2주택이상 소유자는 소득 공제 제외

<개정이유>

☐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부동산투기 억제 도모

☐ 다주택소유자 또는 고가주택소유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통해 다른 주택의 취득 또는 주택저당차입을 지원하는 것은
주택구입이 어려운 저소득계층과의 과세불형평 소지

<적용시기> 2006.1.1 이후 가입하거나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4)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소득령§8의2)

현 행	개 정 안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 3주택 이상 소유자 * 예외 : 기준시가 6억원초과 주택은 주택수에 상관없이 임대소득 과세	○ 2주택이상 소유자

<개정이유>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해 다주택 보유자의 투기심리를 억제하고 주택 가격안정 및 과세형평 제고

※ 현재와 같이 주택임대소득중 전세금은 과세하지 않음

<적용시기> 200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소득령§16)

현 행	개 정 안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 국외 근무자 - 월 150만원	○ 비과세 금액 축소 - 월 100만원

<개정이유>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제도('74년 도입)는 외화획득차원에서 국외 인력송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 현재는 인력송출이 고소득 전문직중심의 해외취업형태로 전환된 점을 감안

<적용시기> 200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용하는 수익사업 과세전환
(부가령§32의2)

현 행	개 정 안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용역중 과세대상 ☐ 우정사업조직의 택배용역 ☐ 고속철도 여객운송용역	☐ 국가·지자체 등의 수익사업을 과세로 전환 (예시) ☐ 부동산 임대업, 음식·숙박업 ☐ 도·소매업 ☐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 목욕장업과 예식장업 등

<개정이유>

- ☐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수익사업을 과세로 전환하여 공정 경쟁 촉진

<적용시기> 2007.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세율 조정

(1) 주세율 조정(주세법§22)

현 행	개 정 안
☐ 주종별 주세율 ○ 탁주 : 5% ○ 약주·청주·과실주 : 30% ○ 맥주 : 90% → 80%('06) → 72%('07) ○ 소주·위스키 등 : 72%	○ 세율 조정 - 소주·위스키 등 : 90%

<개정이유>

- ☐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증류주의 세부담을 국제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 세율을 인상

<적용시기> 2006.1.1 이후 반출·판매·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2) LNG 세율 조정(특소세법§1)

현 행	개 정 안
☐ LNG 세율 ○ 40원/kg	☐ 세율 조정 ○ 40원/kg → 60원/kg

<개정이유>

- ☐ 현행 LNG 세율은 서민들이 주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등유 세율(154원/ℓ)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므로 유종간 형평을 맞출 필요
- ☐ 등유의 열량당 소비자 가격은 LNG의 2배 수준이며 유류세 부담은 열량당 7배 수준('05.7월 기준)

(단위 : 원)

구 분		실내 등유(A)	LNG(B)	차 액(A-B)
유 효 열 량 당 (천 kcal)	가 격	132.12	60.7	71.42
	유 류 세 율	25.4	3.6	21.8

- ☐ LNG의 세율을 적정수준 인상함으로써 중유 수요가 LNG로 대체되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문제 다소 완화 가능

<적용시기>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

3. 고령화 및 양극화에 대응한 세제 보완

◇ 참여정부 출범이래 중산·서민층 지원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각종 세제지원을 추진

-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확대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신설
- 영유아 교육비 공제한도, 6세이하 자녀공제 확대
- 직장 보육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여건 변화, 양극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세제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 출산율(명) : ('72)4.14 ('82)2.42 ('92)1.78 ('03)1.19
외국('03) : 일본 1.33, 스웨덴 1.54, 프랑스 1.89
- * 고령화비율(%) : ('50)3.0 ('75)3.6 ('00)7.1 ('25)16.9(전망)
- * 5분위 소득배율 : ('97)4.49 ('98)5.41 ('00)5.32 ('03)5.22 ('04)5.41

◇ 퇴직연금제 시행에 맞추어 퇴직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농어민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양극화에 대응하는 한편,

◇ 그동안 과세실익이 없어 별도의 소득파악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저소득계층에 대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1)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 지원세제 정비

(1)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소득세법§47의2)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자의 연금저축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 연간 240만원)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공제한도 없이 전액 공제 (연금수령단계에서 전액과세)	☐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추가 허용 ○ 기존 연금저축불입액과 통합하여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개정이유>

- ☐ 퇴직연금제도의 시행('05.12)에 맞추어 근로자가 추가 불입하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하여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 유도

※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 필요성

- 국민연금제도의 보완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재정의 장기적인 안정 도모
- 기업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한편, 기업의 일시 퇴직금 지급에 따른 자금부담 해소

<적용시기> 2005.12월 이후 퇴직연금 가입분부터 적용

(2)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 수령시 소득공제한도 조정(소득세법§48)

현 행	개 정 안
☐ 연금수령시 일정액을 연금 소득에서 공제 ○ 과표구간별 공제금액 - 25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250~5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초과금액의 40% - 500~900만원 :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20% - 900만원 초과 : 430만원 + 900만원 초과금액의 10% ○ 공제 한도 : 600만원	☐ 연금수령시 소득공제금액 확대 ○ 과표구간별 공제금액 - 350만원이하 : 전액 공제 - 350~70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초과금액의 40% - 700~1,400만원 : 490만원 + 700만원 초과금액의 20%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0% ○ 공제 한도 : 900만원
☐ 퇴직금 수령시 퇴직급여액의 50%를 소득공제	☐ 퇴직금 수령시 퇴직급여액의 45%를 소득공제

<개정 이유>

- ☐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간에 소득세 부담이 적정하게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 유도

<적용시기> 2006.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퇴직급여충당금 손비인정 한도 축소(법인령 §60)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이 사용인 등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 사외에 실제 불입하는 보험료 등은 손금산입 * 퇴직보험료, 퇴직일시금신탁 ○ 사내유보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비인정 한도 - 당기한도 : 1년이상 근속한 사용인등 총급여액의 10% - 누적한도 : 퇴직금 추계액의 40%* * ('67) 100% → ('73) 50% → ('99이후) 40%	○ 퇴직연금 분담금 추가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비인정 한도 축소 -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인정하되 총급여액의 5%로 축소 - 누적한도 축소 - 추계액의 30%로 축소

<개정 이유>

- ☐ 기업이 부담하는 퇴직연금 분담금을 손비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 ☐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사내유보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비인정 범위 축소

<적용시기> 2005.12월 불입분, 2006.1.1 이후 개시사업연도 충당금 설정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자영사업 경영안정 지원

(1) 영세자영업자 세부담 경감을 위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조정(부가령§74의3)

현 행	개 정 안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제조, 전기·가스, 소매업 : 매출액의 20% ○ 농·어업, 건설, 부동산임대 : 30% ○ 음식, 숙박, 운수·통신업 : 40%	☐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 소매업 : 15%(5%p 인하) ○ 음식·숙박업 : 30%(10%p 인하) ※ 07년 말까지 한시적용

<개정이유>

- ☐ 음식·숙박업등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율을 조정
 - 향후 경기회복 전망과 과표양성화 등을 고려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인하

<적용시기> 2006.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자영업자 등의 사업양수도 요건 완화(부가령§17)

현행	개정안
☐ 사업양수도시 부가가치세 비과세 <요건> ☐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 사업(업종) 동일성 유지 ※ 다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	☐ 비과세 요건 완화 ☐ (현행과 동일) ☐ 사업 동일성 요건 삭제 ☐ 일반, 간이과세자 불문 (과세사업자간 사업양수도)

<개정이유>

- ☐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양수도의 요건 완화

<적용시기> 2006.1.1 이후

(3) 중소기업 생산자금 선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론 활성화
(조특법§7의2)

현 행	개 정 안
☐ 네트워크론을 통하여 구매대금 결제시 세액공제(0.15%, 0.3%) ☐ 네트워크론 요건 - 금융기관이 구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하여 세액공제 허용	☐ 네트워크론 요건 - 주문받은 물품을 납품하기 전에는 금융기관이 상환 청구권을 판매기업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도 세액 공제 허용 ☐ 결제대상거래 - 대기업간 결제만 배제 * 기업어음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간 거래만 인정

<개정이유>

- ☐ 판매기업(중소기업)이 납품전에 생산자금을 선대출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론의 활성화

<적용시기> 2006.1.1 이후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활성화

(1)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배당소득 분리과세(조특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세제지원 ○ 배당소득 14% 분리과세 - 지원요건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 장기자금운용이 가능한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장기임대주택 건설의 활성화 도모

※ 부동산간접투자기구 :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등
실물자산에 투자하여 투자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투자회사

<적용시기> 200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임대사업 목적의 SPC 지원(법인세법 §51의2)

현행	개정안
☐ SPC 등 명목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지급배당에 대해 소득공제 * 부동산투자회사, 유동화 전문회사 등	☐ 명목회사에 추가 ○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SPC

<개정이유>

- ☐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SPC의 설립을 통한 임대주택 사업시행 지원

<적용시기> 2006.1.1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4) 농·어민 생산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1) 친환경 농업용 자재에 대한 지원 강화(농림특례규정§3)

현 행	개 정 안
☐ 영세율 적용 친환경농자재 ○ 키토산, 목초액, 천적 ☐ 사후환급 적용 자재 ○ 농업용 파이프, 필름 등 ☐ 영세율 적용제외 대상 농약 ○ 저곡해충약, 고독성농약	○ 이앙기용멸칭종이* 추가 * 벼 피복용(제초제 살포 억제) ○ 축산업용 톱밥 추가 * 축산폐수 및 분뇨 정화용 ○ 어독성 농약(1급) 추가

<개정이유>

- ☐ 친환경농업용 자재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친환경농업 확산 유도

<적용시기> 2006.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05)

현 행	개 정 안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05년 12월말까지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2년 연장 ○ '07년 12월말까지

<개정이유>

- ☐ 외국 농수축산물의 수입급증 및 농산물 개방압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생산비용의 절감 지원

<적용시기> 2006.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저소득·차상위계층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

(1) 일용근로자와 비과세·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 제출

- 분리과세, 비과세 또는 소액 등을 사유로 제출의무가 면제되었던 지급조서 등에 대해서도 제출의무 부여

(2)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시기 차등

-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급조서를 분기별로 제출토록 하여 개인별 소득자료에 대한 관리 강화

(3) 지급조서 제출수단 간소화

- 고용주의 납세협력비용 증가를 감안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통한 지급조서 제출, 고용보험법상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근로내역신고서 등으로 제출수단을 간소화

(4) 지급조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강화

-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해서도 지급조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5) 인별 부동산 소유현황 파악 규정 신설

- 인별 부동산소유현황 자료보유기관에 국세청의 조회·확인 근거 마련

(6)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한 근로소득자료 수집근거 마련

- 국세청이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현황자료,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자료를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집·조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7)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관리강화

- 특정 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골프장 캐디 등) 사업장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 확대

4. 국가균형발전 지원

- ◇ 국가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현재 창업·지방이전·투자·영업 단계별로 8개의 지방우대 지원세제 운용
 - (창업단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外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4~~년간 법인·소득세 50% 감면
 - (이전단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대도시에 소재한 본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양도소득세를 6년간 과세이연하고 이전 후 7년간 법인·소득세 감면(5년 100%, 2년 50%)
 - (영업단계)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법인·소득세에 대해 감면 우대
 - * 지역별 감면율 : 수도권(10%~20%), 비수도권(5%~30%)
- ◇ 현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으나
 - 실효성이 약하고,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지역·업종 등이 복잡·다기하여 기업이 이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 지역별 낙후도 등에 대한 배려가 없어 균형발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 * 비수도권 창업비율 : '00년 이후 34%대로 일정
 - * 법인수비율(수도권:비수도권) = ('00) 56.5 : 43.5 $\Rightarrow$ ('04) 60.9 : 39.1
- ◇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이전 지원세제는 연장하고
 - 현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지역별 낙후도 등을 고려한 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제도로 전환하여 국가 균형발전 지원

1) 균형발전 지원세제 확충

(1) 균형발전 특별세액감면제도 신설(조특법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폐지) ① 지원 대상지역 및 기업 ○ 수도권 : 소기업, 지식기반산업 ○ 비수도권 : 중·소기업 ② 대상업종 ○ 제조업 등 27개 업종 ③ 감면율 ○ 소기업(도매업 등) : 10% ○ 수도권 소기업(도매업등 제외): 20% ○ 수도권외 소기업(") : 30% ○ 수도권외 중기업(") : 5% ○ 수도권 중기업(지식기반) : 10% ○ 수도권외 중기업(도매업등 제외) : 15% ④ 일몰 : '05.12.31	☐ 균형발전 특별세액감면 신설 ① 지원 대상지역 및 기업 ○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② 대상업종 ○ 제조업 등 33개 업종 - 추가업종 : 선박관리업, 광고업, 무역 전시업, 분뇨처리업, 기술계 학원, 주거용건물 공급업 ③ 감면율 ○ 광역시 : 20% ○ 비수도권 : 30% ○ 신활력지역* : 40% * 신활력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행자부가 고시하는 70개 낙후 시·군(거창,청양,화천등) ④ 일몰 : '08.12.31

<개정이유>

- ☐ 기존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를 수정·보완한 균형발전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 지원
- 감면율 적용방식을 기업규모별·업종별에서 지역별(낙후도 고려)로 변경함으로써 균형발전 지원세제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006.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기업의 단계적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확대(조특법§63, §63의2)

현 행	개 정 안
☐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63) ○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 권역외로 이전시 세액감면 ○ 일몰 : '05.12.31	○ 일몰연장 : '08.12.31
☐ 법인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 감면 (§63의2) ○ 감면요건 -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당해 연도에 본사 인원이 50% 이상 이전한 경우 감면 ○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 토지, 건물의 양도차익 ○ 감면내용 : 7년간 세액감면 (5년간 100%, 2년간 50%) ○ 일몰 : '05.12.31	○ 단계적 지방이전 지원 -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이전한 인원이 50% 이상인 경우 감면 ○ 감면대상에서 제외 소득 추가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포함 * 분양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등 ○ 일몰연장 : '08.12.31

<개정이유>

-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이전시 본사 근무인원이 일시에 이전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단계적 이전이 가능하도록 감면요건 완화

<적용시기> 이법 시행후 최초로 이전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3) 지방이전 기업 종업원에 대한 지원(소득영§155)

현 행	개 정 안
☐ 1세대1주택 비과세 ○ 거주이전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 종전주택을 1년내 양도시 비과세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공공기관 종사자,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이 - 당해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지역(시·군) 또는 연접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 종전주택을 2년내 양도시 비과세(중복보유 허용기간 연장)

<개정이유>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지원

<적용시기> 2006.1.1 이후 지방이전 할 공공기관의 종사자와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에게 적용

5. 세제간소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 ◇ 영세 중소기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근로자의 연말정산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
 - 세금계산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표준전자장부에 의해 투명한 기장이 가능한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하고
 - 연말정산서류를 전산화하여 증빙서류없는(Paperless) 연말정산 환경 구축

1) 성실 중소기업자를 위한 간편납세제도 도입

(법인세법·소득세법 조문신설)

(1) 적용대상 및 방법

□ 적용대상 :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성실 중소기업자

○ 매출액 기준 : 국세청,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추후 결정(시행령 개정시)

○ 전자장부에 매출, 매입, 경비 등 거래내역을 기장하여 투명성·객관성이 담보되는 성실 중소기업자에 대해 적용

* 전자장부 : 국세청장이 인증한 전자장부 (POS, ERP 등)

국세청에서 개발·보급한 표준 전자장부

□ 적용방법 : 선택

○ 언제든지 포기가능하나, 임의포기시 5년간 선택 제한

○ 매출액 증가로 기준 초과시 2년간 유예기간 연장

□ 적용시기 : 07.1.1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적용

(2) 과세소득의 계산

- ☐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하고 전자장부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세무조정 등 소득계산방법을 단순화·표준화

① 감가상각비

현행	간편납세
☐ 감가상각비 계상방법 ○ 결산서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한도내에서 손금 산입 (임의상각)	○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한도계산 (강제상각)
☐ 상각방법 ○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	○ 정액법으로 단일화
☐ 내용연수 : 기준 내용연수의 $\pm 25\%$ 범위내 선택 가능 ○ 무형고정자산 : 5~50년 ○ 기계장치 : 업종(5개 그룹)별 기준내용연수(5, 8, 10, 12, 20년) ○ 건물 : 20년 또는 40년	☐ 단일 내용연수 ○ 5년(건물은 20년)
☐ 특례 규정 ○ 내용연수 50%경과 중고자산 : 내용연수의 50%~100% (선택) ○ 연도중 취득자산 : 월할계산 ○ 즉시 상각 (당기 비용) :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 적용 배제 *다른 자산과 동일 내용연수 ○ 상각범위액의 1/2 ○ 300만원으로 인상

② 접대비

현 행	간편납세								
☐ 접대비지출액의 손금산입 한도액 ○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 매출액 × <u>적용율</u> <table> <tr> <th>매 출 액</th><th>적용율</th></tr> <tr> <td>100억원 이하</td><td>0.2%</td></tr> <tr> <td>100~500억원</td><td>0.1%</td></tr> <tr> <td>500억원 초과</td><td>0.03%</td></tr> </table> ○ 지출증빙 수취의무 등	매 출 액	적용율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 정액 한도로 단순화 * 예) 간편납세적용대상을 매출액 기준 10억원 이하로 하는 경우 최대 한도인 2,000만원 ○ 적용
매 출 액	적용율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③ 기부금

현 행	간편납세
☐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 ○ 법정기부금(소득금액의 100%) : 국가·지자체 기증금품 등 ○ 특례기부금(소득금액의 50%) : 사립학교, 국립대병원 등 ○ 지정기부금(소득금액의 5%) : 사회복지법인, 학술, 장학, 종교단체 등 * 한도초과액 3년간 이월공제	☐ 기부금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부금 총액한도만 설정 ○ 매출액의 0.5% * 이월공제 배제

※ 소득금액 계산 전에 한도산출이 가능하도록 매출액기준 적용

④ 준비금·충당금

현 행	간편납세
☐ 퇴직급여충당금 (사내유보) ○ 당기한도 : 총급여액의 10% ○ 누적한도 : 퇴직금추계액의 40% ☐ 퇴직보험료 등(사외적립)의 누적한도 ○ (퇴직금 추계액 - 충당금)상당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 ☐ 조특법상 각종 준비금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등)	○ 5%로 축소 *일반기업도 동일 ○ 총급여액의 25% ○ 한도 계산없이 전액 손비인정 ○ 적용 배제

※ 퇴직금 추계액 계산없이 충당금 설정이 가능하도록 특례 허용

⑤ 기타 각종 경비

현 행	간편납세
☐ 다음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타법인 출자, 업무무관 자산,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자금 ☐ 기타 경비 ○ 인건비, 여비, 공동경비 등 : 기준 적합시 손비인정 ☐ 외화자산·부채 ○ 매년도말 환율로 평가하여 평가손익 계상	○ 적용 배제 ○ 전액 손비인정 ○ 적용 배제

※ 원칙적으로 경비는 손비인정하고, 자산평가 예외 인정

(3) 세액 계산 및 신고·납부

① 개산 세액공제

현행	간편납세
☐ 과세표준 및 세율 ○ 각사업연도소득 - 이월결손금 등 ○ 세율: 1억원이하 13%, 초과 25%	☐ 좌동
☐ 세액감면·공제 ○ 익금불산입 ○ 비과세 ○ 소득공제 ○ 준비금 ○ 세액감면: 창업감면 등 ○ 세액공제 - 중소기업투자, 임시투자 등	☐ 각종 감면 적용을 배제하되, 중소기업 업종에 대해 개산세액공제 허용 ○ 수도권 : 10% ○ 비수도권 : 20% * 본점 기준 - 최저한세(10%) 배제 - 농특세(감면세액의 20%) 비과세

※ 활용도가 낮은 복잡한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대신 일률적인 개산세액공제 적용

② 매출증가에 따른 세부담 경감 및 경정배제

현 행	간편납세
☐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 전년대비 매출액이 1.3배이상 증가한 ERP등 도입 중소기업, 소규모 성실신고사업자 등에 대해 ○ 일정기준(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 신장율)을 초과하여 증가한 매출액 상당 세액의 150%를 2년에 걸쳐 공제 (1년차 100%, 2년차 50%) *최저한세는 적용 ○ 증빙에 의해 과소신고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외에는 경정배제	☐ 전년대비 매출액이 1.1배이상 증가시 ○ 전년대비 1.1배를 초과하여 증가한 매출액 상당세액 전액을 1회에 100% 공제 * 최저한세 배제 ○ 좌동

※ 전자장부 사용에 따라 매출이 증가하는 분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경정을 원칙적으로 배제

③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

현 행	간편납세
☐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 ○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 ○ 세무조정계산서 : 매출 5억원이상 법인은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 ☐ 중간예납 : 다음 방법중 선택 ○ 직전연도 법인세액의 1/2 ○ 당해연도 6개월분 가결산	○ 예외인정 *자기조정 세무조정계산서 제출 ○ 단일화 *가결산 방법 배제

2) 연말정산 간소화

(1) 연말정산 간소화(소득세법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위해 의료비·교육비 등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 *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등 15종	☐ 연말정산서류를 전산화하여 증빙서류없이(Paperless) 연말정산하고 국세청은 전산으로 부당공제여부 확인

<개정이유>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매년 반복되는 증빙서류 발급 및 제출과정에서 나타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 사업자의 부담(서류 송달·보관비용) 등 사회적 비용 절감

* 연말정산시 증빙 제출인원(1,860만명) : 보험료(550), 의료비(140), 교육비(200), 주택자금(90), 기부금(300), 연금(140), 신용카드(420)

<적용시기> 200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적용

(2) 연말정산 전산화대상 자료제출 의무부여 등(소득세법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전산화대상 자료를 ☐ 협회나 교육부 등을 통하여 국세청에 제출토록 의무화 ☐ 국세청이 영수증발급기관에 대하여 ☐ 연말정산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 연말정산자료의 비밀유지 ☐ 자료를 집중하는 협회나 교육부 등은 과세용도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개정이유>

- ☐ 전산화가 가능한 연말정산자료*는 발급기관이 협회, 교육부 및 노동부를 통하여 국세청에 제출토록 의무화

*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사용, 직업훈련비, 연금저축, 보험료

<적용시기> 200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적용

(3)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소득세법§52)

현 행	개 정 안
☐ 의료비의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 매년 1월~12월 지출분 *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 대상기간 : 전년 12월~ 금년 11월 지출분	○ 전년 12월~금년 11월 지출분

<개정이유>

- ☐ 의료비의 경우 자료집중에 따른 자료구축 기간을 감안하여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을 전년 12월~금년 11월 지출분으로 조정

<적용시기> 2006.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1) 신고·납부기한 연장사유 확대(국세기본법§5)

현 행	개 정 안
☐ 신고·납부기한이 익일로 연장되는 경우 ☐ 공휴일 ※ 현재 근로자의날·토요일은 납부기한 특례만 인정	☐ 토요일·근로자의 날 추가

<개정이유>

- ☐ '05. 7월부터 관공서에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근로자의 날에 대부분의 직장이 휴무하는 점을 고려

<적용시기> 이 법 공포일부터 시행

(2)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한 연장(국세기본법§81의10)

현 행	개 정 안
☐ 적부심사 청구대상 ☐ 세무조사결과통지 ☐ 실지조사 파생자료 등	☐ 대상확대 ☐ 일정금액 이상의 단순과세 자료
☐ 적부심사 청구기한 ☐ 세무조사 결과 또는 과세예고 통지 후 20일	☐ 기한연장 ☐ 세무조사 결과 또는 과세예고 통지 후 30일

<개정이유> 납세자의 불편 해소

<적용시기> 이 법 시행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3)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국세기본법§84의2)

현 행	개 정 안
☐ 포상금 지급대상 ☐ 조세탈루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추가

<개정이유>

☐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시민 통제시스템을 마련하여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

<적용시기> 이 법 시행후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압류금지 되는 급여의 범위조정(국세징수법§33)

현 행	개 정 안
☐ 급여의 압류제한 ○ 금액에 관계없이 급여의 1/2까지 압류 금지 <단서 신설>	○ 최저생계비 수준인 120만원까지는 무조건 압류금지 ○ 월급여 600만 원을 초과하는 급여부분에 대하여는 초과되는 급여의 1/4까지 압류금지 예) 월급여가 1,000만원인 경우 압류 금지금액 ・ 현행(500만원) → 개정(400만원) * $600\text{만원} \times 1/2 + (1,000\text{만원} - 600\text{만원}) \times 1/4$

<개정이유>

- ☐ 저임금 근로자 등의 최저생계비는 보장하고, 고소득자에 대해서도 1/2까지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혜택임
- * 민사집행법의 규정과 일치

<적용시기> 2006.1.1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5) 인지세 전자납부방식 도입(인지세법§8)

현 행	개 정 안
☐ 인지세 납부방법 (원칙) 수입인지 첨부 (예외) 현금납부(선납·후납) <신 설>	○ 전자납부 방식 도입 - 전자등기신청시 인지세 납부와 사후정산

<개정이유>

- ☐ 대법원이 추진중인 전자등기 신청제도*의 기반을 조기에 확대하고 수입인지의 불법사용 가능성을 제거

*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전자등기 신청하고 등기원인 서류는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전송

- 전자등기 신청시점에서 인지세 등을 전자납부하고 대법원에서 인지세수입을 사후 정산하여 국고에 불입

<적용시기> 2006.1.1 이후 등기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관세제도 개선

(1) 통관단일창구 운영 법적근거 마련(관세법§226)

현 행	개 정 안
□ 수출입업자 등이 통관을 위해서는 수입신고 이외에 검역신고 등 여러 가지 요건 확인 ○ 수출입업자가 개별 법령의 소관부처·기관별로 승인·허가 등을 받고난 후 세관에 수출입 신고	○ 세관에서 수출입신고 뿐만 아니라 여타부문 신고도 일괄처리

<개정이유>

- 관세청의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출입 민원 편의 제고

* 통관단일창구는 현재 식약청 등 8개 수출입요건 확인기관의 각종 신고서를 대상으로 구축 중

<적용시기> 2006.1.1 이후 수출입 신고분부터 적용

(2) 세관장의 승객예약정보 제출요구권 신설(관세법§135)

현 행	개 정 안
☐ 입출항신고시 항공사(선사)의 세관 제출정보 ☐ 적하목록, 선기용품목록 ☐ 승객 및 승무원 명부 등 <신 설>	☐ 승객예약정보

<개정이유>

- ☐ 종전에는 항공기(선박) 탑승자 명단만을 활용하여 APIS*를 운용하였으나

* APIS(Advanced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 여행자가 입국하기 전에 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우범여행자 선별등 사전대응 체제

- ☐ 승객예약 정보까지 입수하여 날로 지능화해가는 여행객 가장 밀수, 테러우범자 입국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

* 최근 법무부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동 제도 기 시행중

<적용시기> 2006.1.1부터 시행

(3) 관세 가산세 부과체계 개선(관세법§42)

현 행	개 정 안
☐ 일반수입시 가산세율 ○ 부족세액의 20% 범위내 대통령령에 따라 가산세 부과	○ 내국세체계와 같이 가산세를 2종류로 구분하여 운영 - 신고불성실 가산세 :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 연리 4.745%(1일, 13/100,000)
☐ 간이수입시 가산세율 ○ 이사화물 : 20% ○ 여행자휴대품 : 30% <신 설>	○ 승무원 : 30%

<개정 이유>

☐ 관세의 가산세 체계를 내국세와 마찬가지로 세분화함으로써
 운용의 합리성 제고

☐ 간이수입시 가산세율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승무원에 대한
 규정 신설

<적용시기> 2006.1.1 이후 부과고지분부터 적용

IV. 향후 추진일정

- ☐ 8.26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
- ☐ 9.15(예정) 차관회의
- ☐ 9.20(예정) 국무회의
- ☐ 9.30(예정) 국회제출